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71
----------	-------

발의연월일 : 2026. 8. 13.

발 의 자 : 김태호 · 윤영석 · 서범수
신성범 · 김성원 · 안상훈
안철수 · 조정훈 · 김정재
윤상현 · 임태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영의 건전성과 더불어 주거안정 역시 고려한 별도의 대출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주택관련 담보대출 규제로 인하여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경색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대출공급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

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등).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에 관한 별도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경영의 건전성과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담보인정비율 및 그 밖의 대출의 취급에 관한 최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택관련 담보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주택관련 담보대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제5호의2 중 “제34조의2제1항”을 “제34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 중 “제34조의3제1항”을 “제34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4조의3제3항”을 “제34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4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에 관한 별도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경영의 건전성과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담보인정비율 및 그 밖의 대출의 취급에 관한 최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u> <u>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택관련 담보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u> <u>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주택관련 담보대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u>
<u>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생 략)</u>	<u>제34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현행 제34조의2와 같음)</u>
<u>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생 략)</u>	<u>제34조의4(금융사고의 예방) (현행 제34조의3과 같음)</u>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제69조(과태료) ① ----- ----- -----

과한다.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u>제34조의2제1항</u> 을 위반한 은행	5의2. <u>제34조의3제1항</u> ----- -----
5의3. <u>제34조의3제1항</u> 을 위반한 은행	5의3. <u>제34조의4제1항</u> ----- -----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u>제34조의3제3항</u> 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 한 은행	1. <u>제34조의4제3항</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